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59회 제2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22. 12. 9.(금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	신종갑 의원 외 10명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조례안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신중갑 의원 외 10명
- 제안일 : 2022. 11. 22.
- 회부일 : 2022. 11. 25. (의안번호 : 22-128)

2. 제안이유

- 마포구와 국내외 공공기관, 기업체, 교육·연구기관, 각종 단체·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실효성 없는 협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, 적용범위(안 제1조~제3조)
- 업무제휴·협약의 체결방법(안 제4조)
-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

5. 절차이행

- 본 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」 규정에 따라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완료함.

6. 검토보고

- 본 조례안은 신중갑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,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,
- 제정안의 취지를 살펴보면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에 근거하여 마포구가 국내외 공공기관, 기업체, 교육·연구기관, 각종 단체·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구민의 삶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내용의 제휴 및 협약이 이뤄지는지 현재 구민과 구의회가 알 수 없는 상황임.
- 따라서 본 제정안을 통해 마포구청은 사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제휴와 협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체결 후 이를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에 보고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된 것임.

○ 주요내용으로는

- (안 제1조~제3조)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, 적용범위
- (안 제4조)에 업무제휴·협약의 체결방법
- (안 제5조)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제정안은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업무제휴나 협약 관련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됨.

- 또한, 예산이 수반하는 경우에는 구의회 보고 후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,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